

**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651호**

「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0년 9월 20일

국토해양부장관

1. **고시명** :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
2. **고시내용** : 별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
3. **시행일** : 2010년 9월 23일

[별표]

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

구분	물품명	객실 반입 가능	위탁 수하물 처리
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	검 및 칼이 든 지팡이	×	○
	끝이 뾰족한 우산	×	○
	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	×	○
	다용도 칼	×	○
	도끼 및 자귀	×	○
	드릴 및 길이가 5.5cm 이상의 드릴날	×	○
	등산용 폴	×	○
	렌치/스패너	×	○
	면도칼과 칼날(안전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)	×	○
	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.5cm이상 되는 칼(세라믹 칼 포함)	×	○
	박스 커터칼	×	○
	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	×	○
	빙상 스케이트	×	○
	사브르	×	○
	쇠지레	×	○
	스키용폴	×	○
	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,	×	○
	외과용 메스	×	○
	작살 및 창	×	○
	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	×	○
	톱류	×	○
	표창(Throwing stars)	×	○
	해머 및 프라이어	×	○
	화살 및 다트(던지는 화살)	×	○
	5.5cm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	×	○
	끝이 둥근 가위	○	○
	끝이 둥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	○	○
	요리용 다지기	○	○
	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깎이 세트	○	○
	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	○	○

구분	물품명	재실 반입 가능	위탁 수하물 처리
둔기	격투용 도구(예: Knuckle Dusters, 곤봉, 도리깨, Num chucks, Kubatons, Kubasaunts)	×	○
	곤봉	×	○
	골프채	×	○
	뉘시받침대	×	○
	당구·스누커용 큐대	×	○
	라코르스·하키 스틱	×	○
	릴레이용 바통(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, 경찰봉, 야경봉 및 바통 등)	×	○
	볼링공	×	○
	스케이트보드	×	○
	아령	×	○
	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	×	○
	카약 및 카누 패들	×	○
	크리켓	×	○
	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	○	○
	카메라 삼각대	○	○
화기류, 총기류, 무기류	격발식 활	×	○
	국궁	×	○
	기동장치 총	×	○
	모든 총기류 및 화기류(회전식 권총, 소총,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)	×	○
	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	×	○
	볼 베어링 총	×	○
	산업용 볼트 및 못 총	×	○
	새총	×	○
	화기류의 부속품(망원장치 제외)	×	○
	수갑(범죄인 호송 등 공무목적 제외)	×	○
	신호기 화염총	×	○
	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	×	○
	양궁	×	○
	작살 및 창 발사 총	×	○
	채찍류	×	○
	총기모양의 라이터	×	○
	추진발사용 무기	×	○
	충격장치(예: 가축 찌르는 막대)	×	○
	동물도축장비	×	○
	수중횃불(랜턴)	○	○
	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땀장비	○	○
	연료없는 석유버너·램프 등 캠핑장비	○	○
	휴대용 라이터 1개(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)	○	×

구분	물품명	객실 반입 가능	위탁 수하물 처리
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	눈물가스	×	×
	독극물류	×	×
	방사능 물질(예, 의료용 또는 상업용 동위원소)	×	×
	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(예, 수은, 염소)	×	×
	산성 및 알칼리성 물질(예, 습식 배터리)	×	×
	소화기	×	×
	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	×	×
	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 물질(예, 감염된 피,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)	×	×
	취루가스	×	×
	호신용 스프레이	×	×
	후추 스프레이	×	×
	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 보조 장비 [단, 해당 물품은 「항공위험물운송기준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22호)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]	○	○
	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장비[단, 해당 물품은 「항공위험물운송기준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22호)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]	○	○
	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기압계 또는 온도계	○	×
	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	○	×
	구멍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가스인 실린더 1쌍	○	○
드라이아이스 1인당 2.5kg 이하	○	○	

구분	물품명	객실 반입 가능	위탁 수하물 처리
폭발물과 인화성 물질	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	×	○
	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·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리지	×	○
	가스 및 가스용기(예, 부탄, 프로판, 아세틸렌, 산소)	×	×
	공기가 1/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	×	×
	공기가 주입된 풍선	×	×
	뇌관 및 도화선	×	×
	딱 성냥	×	×
	모든 형태의 불꽃	×	×
	발과 캡	×	×
	수류탄류	×	×
	스프레이 페인트(채류성 스프레이 포함)	×	×
	에어로졸(살충제)	×	×
	인화성 액체 연료(예, 석유/가솔린, 디젤,ライター용 액체, 알콜, 에탄올)	×	×
	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	×	×
	탄약	×	×
	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	×	×
	폭발물 및 폭발장치	×	×
	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(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)	×	×
	50ml를 초과하는 접착제	×	×
	70도 이상의 알콜 음료	×	×
액체·겔 (gel)류 물질	개인위생용품(향수·화장수·헤어스프레이, 면도크림, 헤어무스, 구두약, 소염제, 방향제, 신체냄새 제거제, 산소스프레이, 몸에 뿌리는 해충기피제 등) 각 1개	○	○
	머리 염색약·피머약 1인당 1개	○	○
	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겔	○	○

구분	물품명	객실 반입 가능	위탁 수하물 처리
액체·겔 (gel)류 물질	용기 당 최고 500ml 이하의 마찰(Rubbing)알콜	○	○
	화장용 아세톤 각 1개	○	○
	24%이상 70%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ℓ 이하의 알콜 음료	○	○
	3% 과산화수소	○	○
국토 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 (Orange) 단계이상	금속 칼붙이	×	○
	금속제 빵 칼·스테이크용 칼	×	○
	네일니퍼	×	○
	눈썹정리용 칼	×	○
	대바늘	×	○
	등산용아이젠	×	○
	뜨개질바늘	×	○
	면도칼(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)	×	○
	수예바늘	×	○
	은장도	×	○
	재봉바늘	×	○
	주사바늘	×	○
	코르크 마개뽑이	×	○
	콤파스	×	○
	텐트폴 및 팩	×	○
	편지봉투 개봉용칼	×	○
5.5cm 미만의 칼날	×	○	
5.5cm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	×	○	
주사바늘(단,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)	○	○	

## 비고

1.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 감독자가 보안검색 중에 위해(危害)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다.
2. 별표의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위탁수하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된 일부 물품은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다.
3. 화기류, 총기류, 무기류 중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.
4.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이 실리콘 등 화학물질인 경우 승객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.
5. 별표의 구분 란 중 액체·겔(gel)류 물질은 「액체·겔(gel)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650호)의 반입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다.